

■ 정부청사관리규정 [별표] <개정 2025. 12. 16.>

청사의 수급 및 관리 대상이 되지 않는 시설(제3조제1항, 제9조 및 제11조 관련)

1. 국방·군사시설
2. 교육연구시설
3. 교정시설
4. 문화 및 집회시설
5. 의료시설
6. 재외공관용 청사
7. 그 밖에 시설의 주목적이 행정기관의 사무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이 아닌 시설